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 규칙

제정 2016.12.09.

개정 2017.03.29.

개정 2018.02.14.

개정 2018.05.02.

개정 2018.11.10.

개정 2019.04.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0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식품벤처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 또는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벤처센터”란 기업이 식품 관련 제조행위 및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는 업체(기업, 연구소 등)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입주자로 정의된 업체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임대면적”이란 입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
5. “졸업”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식품벤처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임대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강제 퇴실 조치를 받거

나 입주자 스스로 식품벤처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7. “입주예정자”란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센터의 장(이하 이사장)이 입주대상자로 선정한 입주 신청업체를 말한다.<개정 2019.4.08>

8. “소관부서”란 지원센터의 식품벤처센터 운영 담당 부서를 말한다.

9. “공실(빈공간)”이란 입주하지 않아 비어 있거나, 퇴실하여 비어 있는 임대공간을 말한다.

제 2 장 입주기업심의위원회

제4조(입주기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식품벤처센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 여부 및 입주자 성과평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지원센터 관계자 각 1인 및 외부 식품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복수로 위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특별자문이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당해 사안을 심의 완료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된다.

⑥ 위원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된다.

⑦ 외부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개정 2019.4.08>

2. 연구 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개정 2019.4.08>

3.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9.4.08>

4. 국가·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9.4.08>
5. 식품 관련 기업 및 단체에서 식품 전문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19.4.08>

제 3 장 입주 및 임대

제5조(입주 모집공고) ① 입주자의 모집공고는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실이 발생하거나 있을 경우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자격)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신청 자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입주대상 업종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3.29.> <개정 2019.4.08>

1.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전략 5대 식품기업군(기능성·바 및 융합기술식품기업, 발효·전통식품기업, 천연첨가물·식품소재식품기업, 쌀 등 곡물식품기업, 글로벌식품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개정 2019.4.08>

2. 제1호 이외 식품제조업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연구소

4.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예비창업자 포함)<개정 2019.4.08>

5.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개정 2018. 11. 10><개정 2019.4.08>

6.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또는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개정 2018.11.10>

7. 지원센터의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개정 2019.4.08>

8. 기타 지원센터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8.11.10>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제7조(입주 신청 및 승인) ①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서 정한 공고 마감일까지 소정의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와 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별표2·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벤처센터 입주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서류는 소관부서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입주신청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별표1)에 따라 입주기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삭제 2018.02.14>

④ 입주기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능력·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의 80% 이상(가산점 포함) 득한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한다.<개정 2017.03.29>

⑤ 심사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요건서류를 보완하여 차기 심사에 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입주 승인을 통보해야 한다.

⑦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공간 사용 전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시설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0>

1. 시설의 설치 및 구조의 변경

2. 중량 장비, 환경오염 장비, 법적 절차 소요 장비, 전략 장비 반입 및 설치

3. 구조, 외관, 마감재, 공간구획 및 설비 등의 변경<개정 2017.03.29.>

⑧ 제7항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를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05.02.>

⑨ 제8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운용 개시 전에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02.><개정 2019.4.08>

제8조(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2. <삭제 2017.03.29.>
3. <삭제 2017.03.29.>
4. <삭제 2017.03.29.>
5. 업무시설 및 식품벤처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업체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7.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휴·폐업 중인 업체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9.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개정 2018.11.10.>

제9조(예비입주자 선정) 제7조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입주 예정자의 임대계약 체결 지연·입주자의 졸업·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10조(임대계약 체결 및 입주) ①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기한 내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예정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02.14><개정 2018.05.02>

② 임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예정기한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 예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임대계약자가 입주 예정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예정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입주연기 신청서(별지 제2호)를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연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임대계약자에 대해 3매의 식품벤처센터 출입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그 이상의 출입카드가 필요한 임대계약자는 이사장에게 이를 신청(별지 제3호)하고 카드발급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되, 비용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대계약 사항의 변경)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 제출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법인 및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4. 주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연구과제 등의 변경

5.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② 제1항의 4호의 변경 시 이사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계약 전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이행요구 및 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 협의회구성 등) ① 식품벤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자 간의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식품벤처센터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를 대표하며, 입주자들의 공통애로 및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지원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식품벤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관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칙과 제반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면적) ① 식품벤처센터 임대면적은 최대 444.83㎡, 최소 57.15㎡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17.03.29>

② 임대공간은 식품벤처센터 각 층마다 구분된 임대면적 중 인접해있는 2개까지 합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식품벤처센터 내 입주장소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9.4.08>

1.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과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산정 한다. (산정방법 [별표 4] 참조)<개정 2019.4.08>

2. 임대료는 선납으로 하며, 최초 입주의 경우에는 입주 월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익월분과 함께 입주하는 월말까지 이사장이 정하는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단, 연체 시 미납금 전체에 대해 연체요금(15%)을 적용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08>

$$\text{연체가산금} = \frac{\text{미납임대료} + \text{미납관리비}}{365} \times 0.15 \times \text{지연 일수} <\text{개정 2018.11.10.}>$$

<개정 2019.4.08>

3. 임대보증금은 12개월분 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하며, 입주기업이 졸업할 경우에 반환한다. 반환 시는 입주기업의 반환 요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미납 임대료 등 상계가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자 사정에 따라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입주자 또는 식품벤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해당사업이 종결된 시점에 청구하여 반환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비의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은 상계처리 후 지급한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④ 임대료는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비의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정산될 때까지 부과하고, 미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한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제15조(공과금) ①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별표 4〕와 같이 월별로 징수한다.

②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③ 그 밖은 청소비, 공용 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 수선유지비 등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과금은 정부시책의 변경,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입주자에게 30일전까지 인상계획을 통보하고 인상할 수 있다.<개정 2019.4.08>

⑤ 공과금에 대한 연체료는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연체 가산금 계산식을 따른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계약일로부터 최초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성·재무건전성이 우수하여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최초 1회 3년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단, 총 입주기간은 연장기간을 합하여 최대 10년을 넘길 수 없다. <개정 2019.4.08>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계약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별지 제6호)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입주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연장승인이 취소된다.

⑤ 입주연장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이전준비 기간을 줄 수 있다.

제17조(입주장소 이전) ① 식품벤처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는 새로운 입주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입주장소 이전 희망자는 입주장소 이전신청서(별지 제7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장소 이전은 총 계약기간 내 2회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입주장소 이전 희망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입주장소 이전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는 제10조 규칙에 따라 임대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입주장소 이전 전과 동일하다.

제18조(입주승인 취소)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에 의한 날짜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주 예정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경우

4. 그 밖은 관련법령, 계약조건, 운영관리규칙 등 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승인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9.4.08>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잔무 처리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08>

제19조(입주자 지원 서비스) <삭제 2017.03.29.>

제20조(운영관리규칙 준수)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본 운영관리규칙 및 지원센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입주기간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4.08>

제 4 장 <삭제 2019.4.08>

제21조(입주자 자료제출)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2.14.×개정 2019.4.08>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 여부를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입주자에게는 향후 계약연장 시 우대할 수 있고, 불량 입주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제24조에 의거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08>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이사장은 시정요구 및 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 및 촉구를 2회 이상 취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입주기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실적 및 계획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4.08>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⑤ 입주자 사업평가 위원은 입주기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4.08>

제 4 장 졸업 및 퇴거<개정 2019.4.08>

제22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해야 한다.

1.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임대계약 기간 연장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주자가 졸업할 경우에는 졸업희망일 6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별지 제8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졸업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졸업허가증(별지 제9호)을 교부한다.

제23조(졸업 후 지원) 이사장은 졸업자에게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조할 수 있으며, 현 입주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4.08>

제24조(퇴거) 이사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대계약의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식품벤처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4.08>
3. 제21조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불량 입주자로 판명되거나,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개정 2019.4.08>
4.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임대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제8조의 입주승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6.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7. 임대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타인에게 입주 공간 및 부대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8. 임대계약 기간 내에 1개월 이상 상주 인원이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임대계약 기간 내 2회 이상의 이행촉구 및 시정요구를 미이행한 경우<개정 2018.11.10>
11. 입주자 사업평가 결과 연속 2회의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12. 제조시설, 사무기기,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관리 미흡으로 시설물 파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화재, 침수 등의 사고로 벤처센터에 현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19.4.08>
13. 입주자가 제36조의 금지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4.08>
14. 입주자의 안전 및 생산활동에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19.4.08>
15. 식품 관련 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2차 위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4.08>
16. 입주자(사용자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개정 2019.4.08>
17. 벤처센터 입주기업 폐수 방류기준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개정 2019.4.08>

제25조(퇴거절차) ① 입주자가 제2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될 경우 이사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해야 한다.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서면(별지 제10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9.4.08>

② 제1항에 따라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는 퇴거예정기한까지 퇴거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별지 제11호)를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퇴거 시에는 이사장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발급한 출입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임대공간은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퇴거일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퇴거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부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다.

제 5 장 폐수 및 폐기물처리<개정 2019.4.08>

제26조(폐수처리)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실험·연구·생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 하여서는 안되며, 무단방류로 발생한 제반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폐수방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실험·연구·생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기성 및 무기성 폐수, 산알칼리성 폐수를 “입주자”의 폐수저장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한 후 입주자 책임으로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폐수 위탁처리 시 위탁일자, 폐수종류, 폐수량,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 등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 및 지원센터 관련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내용을 항상 공개하여야 하고, 처리내용을 이 사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중 종이류, 금속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및 음식쓰레기 등 재활용 폐기물은 구분하고, 그 밖의 폐기물은 익산시에서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 내에서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안 전<개정 2019.4.08>

제28조(안전관리)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사고, 수재사고, 전기사고 등)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 책임) ① 식품벤처센터 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입주업체 대표자가 된다.

②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30조(보험가입)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입주자의 의무<개정 2019.4.08>

제31조(입주자의 의무)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입주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건물관리와 법인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사용자는 공공시설 보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점검, 가동, 수선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

2. 건물 내의 경비, 청소, 오물수거 및 소독

3. 관리비 사용료 납부 <개정 2019.4.08>

4.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 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내용 숙지<개정 2019.4.08>

5. 단지 내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정 2019.4.08>

6. 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개정 2019.4.08>

7. 건물의 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 2019.4.08>

8. 규칙에 규정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물건의 인도, 월 임대료 지급 등에 있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원센터” 는 “입주자” 에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는 “지원센터” 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9.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과 관련한 비용은 “지원센터”와 “입주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제32조(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
2. 수리·개조·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물 부분
3. 당해 시설물을 수리·개조·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② 제1항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및 공사 명세서
2.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등(이하 “허가”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사업개시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05.02>

④ 제1항의 승인절차는 제7조 제8항과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05.02>

제33조(입주자의 선관의무)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사장의 승낙 없이 시설물의 변경,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③ 입주자가 본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장은 입주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주자 및 사용자, 또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물건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0><개정 2019.4.08>

⑤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 결정한다.<개정 2018.11.10>

제34조(보안)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임차한 공간에 설치한 장비와 기밀사항, 정보통신 등 사용자 안전을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장비 등의 등록 및 신고) 이사장은 식품벤처센터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 현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금지 사항)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이사장이 관리하는 단지 내에서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사장이 설치한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은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 하는 행위

2.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옥,내외에 간판, 홍보물 등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의 것을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옥외 및 내부에 기자재를 적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중량초과, 유해물 방출, 소음, 진동 유발, 위험물, 실험용 자재설치 등)

5. 내화 또는 통풍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내에서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 등을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취급하는 행위

6. 기름 묻은 걸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금속성 용기 이외에 버리는 행위

7. 실내에 취사도구를 반입(커피포트 제외)하거나 옥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8. 석유,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9. 실내에 동물을 반입 사육(애완용포함)하는 행위

10.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1. 각 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야간 유숙 행위
12. 인화물질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되는 위험물 보관 행위
13. 작동 시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배출물이 발생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
14. 제1호 부터 제13호 이외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 입주자 등에 폐가 되는 행위<개정 2019.4.08>

②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센터는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입주자가 이 불응할 경우 향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4.08>

제37조(사고대책)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서 범죄, 화재 그 밖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세워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8조(금연시설 등)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개정 2019.4.08>

제39조(식품벤처센터 이미지 사용)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생산제품 및 자사 기업홍보를 위하여 식품벤처센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식품벤처센터 이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일 30일 전까지 이사장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주차장) ① 주차장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이사장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료화할 수 있다.

제41조(간판 설치 등) ① 간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사장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

2. 설치 장소 및 기간
3.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
4. 설치 위치도 및 개략도면

제42조(출입문 등의 개폐) ① 이사장은 건물의 보안, 냉·난방 시설관리 등의 사정에 따라 개·폐문 시간을 조정·시행하며 출입문, 통로, 계단셔터, 승강기의 개·폐를 관리한다.

② 모든 출입구의 폐쇄 후에는 여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하며 출입이 필요할 시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승강기 사용) ① 승강기의 정기점검은 보수점검 계약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내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화물을 옮기거나 물건을 이동시에는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승강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 운행한다.(예 : 격층제)

3. 승강기 부하량(표시된 인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공휴일에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2일 전 이사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나 사무실 이전 시에는 승강기 내·외부 및 이동통로 벽체 등을 보양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화물운반 및 그 밖은 짐을 운반 할 목적일 때는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44조(그 밖은 시설물 등)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건물 내의 창고, 복도, 로비, 옥상, 조경지, 구내도로 및 유희 공간, 잔여부지에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기자재 등을 적치하거나 그 밖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외벽이나 창호에 건물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배선·배관 등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이용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제1항의 그 밖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 승인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사용료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이 제공하는 공용공간은 이용 전에 이사장에게 시설이용에 대해 승인을 얻고,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쓰이는 행사장 및 관련 시설물은 사용 후 정리정돈 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CCTV 관리<개정 2019.4.08>

제45조 (CCTV 설치목적) ① 이사장은 공익목적으로 CCTV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공익목적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한 범위로 할 수 있다.

③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입주공간의 내부에 방범 및 보안을 목적으로 CCTV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이사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보호조치 및 제한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

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영상정보 처리의 제한)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 생산 및 관리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생산 및 관리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 생산 및 관리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생산 및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장 대관시설의 이용<개정 2019.4.08>

제50조(시설이용 승인신청)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가 이사장이 관리하는 공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시설이용을 승인한 경우 입주자는 유료시설에 대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기준에 따라 그 이용료를 이사장이 지정 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면제 조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시설이용 승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한다.

제51조(시설이용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시설이용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정일의 2일 전까지 시설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시설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승인한 경우, 입주자는 이사장에게 시설 미사용에 따른 환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환급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일 전 요청 시 100% 환급
2. 2일 전 요청 시 90% 환급
3. 1일 전 요청 시 80% 환급
4. 당일 요청 시 70% 환급

제52조(회의실 및 창고) ① 사용범위는 식품벤처센터 회의실, 창고로 구분한다.

② 사용시간은 1일 09:00 ~ 18:00시로 하고, 추가 사용 시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기본 냉·난방 가동시간 이후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냉·난방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장 영업시간 및 휴일<개정 2019.4.08>

제53조(영업시간) 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공간은 08:00~21:00까지로 한하며, 초과사용이 있을 경우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본 조 1항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영업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보안, 에너지 절약 등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4조(휴일) ① 휴일은 다음의 조항에 따른다.

- ② 정기휴일은 일요일(토요일 포함)로 하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
- ③ 부정기 휴일은 법정공휴일, 명절 등으로 정한다.

제 12 장 화 재<개정 2019.4.08>

제55조(화재예방 의무)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건물 전체의 법정수량의 기본 소화 장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양호한 작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법정수량의 기본 소화 장구가 입주자의 과실로 인해 훼손되었을 경우, 훼손 사항은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소방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유류, 가스 및 인화성 화기류를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전열기 사용 시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입주자는 실내에 설치한 비품, 집기류, 커튼류, 내장물질 등을 반드시 불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 장 환경과 위생<개정 2019.4.08>

제56조(건물 주변)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건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기존 시설을 확장, 보수, 개축하거나 내부수리 및 장치를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7조(낙서금지)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산업단지 내 건물 안의 모든 시설물이나 벽체에 낙서를 할 수 없으며, 광고물의 무단 부착도 할 수 없다.

제58조(화장실)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변기 내에 담배꽂초나 껌, 휴지를 버리는 행위 등을 일체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9.4.08>

제59조(청소) ① 식품벤처센터 입주자는 쓰레기의 배출요령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건물의 공용부분 및 조경시설 등의 청소는 이사장이 관리하고, 임대 공간 내의 내부, 집기, 비품 등은 입주자가 관리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 공간 내의 청결에 힘쓰며 쓰레기는 지정한 곳에 모아 처리 한다.

④ 입주자는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이사장에 별도 신고한 후 처리한다.

⑤ 입주자는 이사장이 실시하는 소독작업 및 위생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소독 등을 실시할 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냄새나는 오물 등을 규격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며, 모든 쓰레기는 불씨 및 물기를 제거한 후 지정된 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부 칙(2016.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제반사항은 이 요령에 의거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벤처센터 입주심사평가표

기업분류	<input type="radio"/> 법인사업자 () <input type="radio"/> 개인사업자 () <input type="radio"/> 기타(기관, 협회 등) () <input type="radio"/> 예비창업자 ()
------	---

식품벤처센터 입주심사평가표

심사일자		
심사번호		
심사분야		
평 가 결 과	경영능력 (30점)	점
	기술성 (30점)	점
	사업성 (30점)	점
	기타 (10점)	점
	가점 (20점)	점
	계	
최종결정		

심사대상 기업	기업명		대표자	
	창업일			
	주생산품 (연구과제)			

심사자 : 입주기업심의위원

(서명)

식품벤처센터 입주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100점		
정 성 평 가 *	경영 능력	1. 경영자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의력, 의지력(10점) 2. 경영자로서의 사업계획 수행능력(10점) 3. 소요자금의 단계별 조달방안의 적정성(10점)	30점	
	기술	1. 기술개발 계획 또는 아이디어의 타당성(10점) 2. 시설·장비 보유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10점) 3. 인력 확보 및 계획의 타당성(10점)	30점	
	사업성	1.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2. 사업화 가능성(10점) 3. 시장개척 방안(10점)	30점	
정 량 평 가	기 타	1. 상시고용 예정인원(4점) 1) 9명 이상(4점) 2) 5명 이상 ~ 9명 미만(3점) 3) 3명 이상 ~ 5명 미만(2점) 4) 1명 이상 ~ 3명 미만(1점) 2. 입주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증가율(3점) 1) 100% 이상(3점) 2) 50% 이상 ~ 100% 미만(2점) 3) 0% 이상 ~ 50% 미만(1점) 3. 입주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3점) 1) 30% 이상(3점) 2) 5% 이상 ~ 30% 미만(2점) 3) 0% 이상 ~ 5% 미만(1점)	10점	
가 점		1. 1층에 설비필요업종의 업체가 임대 신청한 경우(5점) 2. 중소기업청장예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4점) 3. 사업관련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3점) 4. 사업관련 특허·실용신안·GD인증**등 각종 인증(3점) 5. 푸드폴리스 창업지원 Lab 수료자 또는 벤처·창업관련 대회 입선이상(3점) 6. 최근3년 이내 대학 등의 벤처·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수료증제출자)(2점)	0~20	

* 정성평가는 각 항목 우수, 보통, 미흡 평가 후 우수(만점)를 기준으로 10%씩 감점 (절대평가)

** 권리취득 및 전용실시권취득도 인정하며 법인명의로 한함

(종합의견)

심의위원 _____ (인)

서 약 서

- 본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또한, 입주업체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 센터에서 제시한 입주조건 등 제반 이행사항을 따르겠습니다.
- 그리고,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입주기업 선정평가와 관련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입주허가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_____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표 4]

임대료 및 공과금 산출 방법

1. 임대료

(단위 : 월 기준, 부가세별도, 천원 이하 절사)

<p>○ 산출식은 '임대료 = 재산평정가격 × 사용료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임대면적 × 건물감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감정액은 식품벤처센터 준공이후 가능하므로 건축비로 산정, 향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p>○ 1층(8.1m), 2·3층(5.4m)의 층고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율 : 1층(50/1000), 2·3층(40/1000) - 부지평가액 : 154,715원/㎡ (클러스터 분양가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3층) 3분의 1

2. 공과금

(단위 : 월 기준, 부가세별도, 원 단위 절사)

구 분		내 용	비 고
개별 요금	전 기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기본요금 = [기본전력(공장5kw, 연구4kw) + 입주기업 개별사용량 × 한전기본적용전력] ÷ 지원센터 전체사용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사용전력량 × 사용단가	실사용량 기준*
	상하수도	상.하수도비 = 사용량 × 사용단가	
	폐수처리	폐수처리비 = 폐수량 × 처리단가	
공동 요금	수 도 광열비	식품벤처센터 내 공동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등의 비용	임대면적 비율*
	일 반 관리비	공동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를 제외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 각종 부담금, 수수료, 보험료(공제비), 시설유지비, 외주용역비 등	

* 계량기 기준으로 부과하되, 별도 부과 및 조정 필요 발생 시 조정 될 수 있음

(첨부자료)

사 업 계 획 서

[입주신청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와의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F A X		E - mail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본사주소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	전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백만원
		신청년도	년 월 현재기준		백만원
	수출액	전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백만원
	사업내용				
연구분야 (개발예정)					
실무담당	성명			직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고자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II. 경영능력

1. 신청자(팀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				
	~				
	~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최종 직위)
		근무처명	주요생산품	전화번호	
	~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 무 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 등)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 복사하여 사용 하십시오.

2. 산업재산권 및 각종 수상기록 현황

구 분	명 칭	담당기관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자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해외 규격인증					
포상 및 수상기록					
기 타					

※ 내용이 많을 경우 복사하여 작성 하십시오.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기 투자금액	조 달 계 획	비 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합 계				

2) 향후 구축 계획

향후 구축의 기본 방향							
장비명	무게(kg)	크기 (W×D×H)	사용전원	소비전력	용 도	금 액 (백만원)	구입일자

3. 인력확보 및 계획

1) 인력확보 계획

구 분		현원(명)	인력확보 계획(명)				확 보 방 안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경영직 · 사무직	임 원						
	사무·영업직						
	기 타						
	소 계						
연구직 · 기술직 · 생산직	박사 또는 기술사						
	석사 또는 기사1급						
	학사 또는 기사2급						
	기 타						
	소 계						
계							

2) 현재 인력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	비고 (취득학위 등)
	~				
	~				
	~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주요생산품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사회활동 등)	~				
	~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사업화현황 등)
			~		
			~		

※ 연구/개발인력이 2인 이상일 경우 복사하여 작성 하십시오.

IV. 사업성

1.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추진의지, 사업화 계획 중심 기술)

2. 사업화 가능성

판매현황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
시장 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	
연도별 판매계획	
예상시장 점유율 및 예상매출 규모	

3. 시장개척방안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	
마케팅 전략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V.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기 투자금액	조 달 계 획	비 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합 계				

VI. 산업재산권 및 각종 수상기록 현황

구 분	명 칭	담당기관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자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해외 규격인증					
포상 및 수상기록					
기 타					

※ 내용이 많을 경우 복사하여 작성 하십시오.

VII. 입주 후 사업계획

1. 생산제품 현황 및 공정도 해설

생 산 제 품 현 황	업종(표준산업분류)	업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제조업 (10301)
	주요 생산품명	김치류
	주 원 자 재	배추, 무, 소금, 젓갈, 고춧가루 등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재료입고		- 재료 입고 및 검수
전처리(세척 등)		- 재료 다듬기(이물질 제거) - 세척(2번)
절임		- 재료 절단 및 소금 절임 - 세척 및 탈수
양념 및 숙냉기		- 양념혼합(마늘, 고춧가루, 젓갈, 생강 등) - 재료에 숙냉기
검사		- 이물질 포함여부 검사
포장 및 납품		- 소포장 및 출하

2. 원료조달 계획

구분	생산 제품	주 원료	조달방법	반입방법 및 보관계획
1				
2				
3				

3. 입주공간 배치도

	구 분	계 획
	제도시설	m ²
	부대시설	m ²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m ²

※ 건축물(기계설비) 의 용도, 위치, 면적, 연도별설치계획만을 연면적 기준으로 표시할 것

4. 시설사용 및 설치계획

	취급 품목	보관온도	보관량	보관단위	보관기간	특이사항
공용시설 (냉장·냉동고) 이용계획		℃	kg		일	
		℃	kg		일	
전용공간 시설설치 계획	냉 · 난방					
	환기설비					
	광 고 물					

(별지 제4호 서식)

식품벤처센터 임대계약변경 신청서

- 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 :
- 회사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입주장소 및 계약면적 :
- 임대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계약변경사항 :

- 계약변경사유 :

상기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식품벤처센터 임대계약기간 연장평가서

업체명		대표자	
최초 입주일		입주공간	
주요 기술			
당초 계약기간		희망연장계약기간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정 성 평 가 *	소 계		60		심의위원 평가
	클러스터 및 지원센터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지원센터 발전 기여도 ○ 지원센터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실적 	20점		
	기술개발 실적 및 신규 사업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연구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 ○ 신규 추진사업 계획 	20점		
	입주 후 사업실적 및 재무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 재무구조의 건실성 	20점		
정 량 평 가	소 계		40점		관리부서 평가
	고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신규인력 고용실적 	8		
	재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 최근 5개년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비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 - 최근 5개년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비율 	4		
	지적재산권 확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실적 	5		
	인증획득 및 포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인증획득 및 포상실적 	3		
	시설 및 장비구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 대비 달성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 공동장비 이용실적 	5		
매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실적(매출액) 증가비율 	3			
매출 대비 수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실적(매출액) 대비 수출액 증가비율 	3			
기타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이노비즈 지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련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의무 불성실 	-7		

* 별첨 : 평가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총 합 평 가 의 건

* 입주 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일로부터 평가

심의위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식품벤처센터 입주장소 이전 신청서

○ 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 :

○ 회사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현 입주장소 및 계약면적 :

○ 이전 입주장소 및 계약면적 :

○ 임대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이전 사유 :

상기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라 입주장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식품벤처센터 졸업허가서

- 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현 입주장소 및 계약면적 :
- 임대계약기간 : ~
- 졸업예정일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운영규칙 제22조에 따라 귀사의 졸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주업체 퇴거 검토서

I.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주 일		입주공간
주요기술		
II. 퇴거 조치 내용		
퇴거조치 사유		
퇴거 통보일		
퇴거 예정일		
III. 이의 제기 내용		
이의 제기 내용		
이의 제기일		
검토결과 (○)	이의 제기 이유 있음	이의 제기 이유 없음
검토 의견		

검 토 자 : _____

(별지 제11호 서식)

식품벤처센터 퇴거신청서

○ 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 :

○ 회사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현 입주장소 및 계약면적 :

○ 임대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퇴 거 예 정 일 : 20 .

○ 퇴거 신청 사유 :

상기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시설·장비		<input type="checkbox"/> 설치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고인	회사명			
	대표자	임대공간	F	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주요 시설·장비명				
설치(변경)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유 (변경신고서 작성)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규칙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변경) 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시설·장비 설치(변경) 계획[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시설·장비 설치(변경) 계획

1. 주요 시설 · 장비 목록

장비명	무게(kg)	크기 (W×D×H)	사용전원	소비전력	용도	금액 (백만원)	기타

2. 입주공간 배치도

	구분	계획
	제조시설	m ²
	부대시설	m ²
	- (세부 시설명)	m ²
	- (세부 시설명)	m ²
	- (세부 시설명)	m ²
계		m ²

※ 건축물(기계설비)의 용도,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연면적 기준으로 표시할 것

3. 유틸리티 등 기타 설비

항목	내용
냉·난방	일정, 설치방법, 실외기 장소 등
환기설비	
기타	

※ 실외기 및 PIT 공간사용에 대해 설치전에 지원센터(시설관리부서)와 협의 필수

4. 주요생산품목

제품명	제품설명